

2023년 본청 정기 재무감사

□ 감사개요

- 기간: 2023. 2. 6.~3. 31.
- 대상: 12개 부서(경제복지국 6, 미래도시국 6)
- 감사반: 3명(감사팀장 외 2명)
- 범위: 2021. 1. 1.~2022. 12. 31.
- 감사내용
 - 지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편법·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적발
 - 이전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및 반영 사례 점검 등

□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천 원)

합계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현지 처분
건수	금액							
46	1,040	8 (1,040)	1	-	-	-	-	37

○ 처분(요구) 목록

연번	건명	수감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명)
				유형	금액(원)	
합계	9건		시정 8 주의 1	환수 8	1,040,000	-
1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55,000	-
2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675,000	-
3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체결 부적정	○○○○○○○	주의	-	-	-
4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155,000	-
5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25,000	-
6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30,000	-
7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45,000	-
8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40,000	-
9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15,000	-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55,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021. 10. 19.	청년몰 홍보 사인물 제작	□□□□	4,395,000	55,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5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총 9건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675,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계	9건	-	-	675,000
2021. 5. 11.	2021년 1/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2,506,460	55,000
2021. 7. 7.	2021년 2/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1,702,800	35,000
2021. 10. 14.	2021년 3/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2,838,880	60,000
2021. 12. 21.	2021년 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1,392,820	30,000
2022. 4. 6.	2022년 1/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5,944,400	135,000
2022. 7. 21.	2022년 2/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4,787,200	105,000
2022. 10. 26.	2022년 3/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6,111,600	135,000
2022. 12. 28.	2022년 4/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4,620,000	105,000
2022. 10. 4	한궁연습장 롤 스크린 설치	◇◇◇◇◇◇	1,237,500	15,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67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주의 요구

제 목 일상경비 지출 및 계약 체결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 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고,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과업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1. 일상경비 집행 기준액 부적정,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에서는 [표1]와 같이 ‘2021년, 2022년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 대행용역’을 추진하면서 총 계약금액이 추정금액 5백만 원이 넘는 용역 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에 집행을 요구하지 않고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집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에는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용역 대금을 지출하였고 2022년에는 부서 내 자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계약서의 계약금액¹⁾과 다른 금액을 지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다.

또한, 용역 대금을 수수료 지출이라는 잘못된 적요로 집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일상경비 지출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지출금액	연도별 지출액
2021. 5. 11.	2021년 1/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2,506,460	8,440,960
2021. 7. 7.	2021년 2/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1,702,800	
2021. 10. 14.	2021년 3/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2,838,880	
2021. 12. 21.	2021년 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1,392,820	
2022. 4. 6.	2022년 1/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5,944,400	21,463,200
2022. 7. 21.	2022년 2/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4,787,200	
2022. 10. 26.	2022년 3/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6,111,600	
2022. 12. 28.	2022년 4/4분기 속초시 승화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 지출	(주)☞☞☞☞	4,620,000	

1) 가족지원과-12173(2022. 4. 5.) 계약금액: 16,838,800원(부가가치세포함) / 지출금액: 15,518,800원(2,3,4분기)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 2023년 1월 3일 체결한 [표2] 2023년 대기환경 자가측정 용역의 표준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금액은 22,783,200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자체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에 상당한 오류를 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2023년 대기환경 자가측정 용역 표준계약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20. 9. 29.>

측정대행표준계약서(신규)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여부	여[] 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측정대행계약관리 기관명				

측정대행 의뢰기관

1. 상호: 속초시청(속초시공원묘원)

2. 사업장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속초시청)

3. 대표자 성명: 이병선

4. 사업자등록번호: 227-83-00267

5. 전화번호:

측정대행업자

1. 상호:

2. 사업장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용역명: 대기환경자가측정용역

계약일자: 2023년 01월 03일

완수기간: 착수일로부터 363일

착수일자: 2023년 01월 03일

완수일자: 2023년 12월 31일

측정대상 사업장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속초시청)

계약금액: 일금 이천이백칠십팔만삼천이백원 (₩ 22,783,200)

계약보증금:

선금:

지체상금률:

조치할 사항

○○○○○○○는

[주의] 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일상경비 집행 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지방계약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 계약 체결 가능 범위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총 4건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55,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계	4건	-	-	155,000
2021. 2. 3.	평생교육문화센터 소화기 교체 구입	(주)○○○○○○○○	1,342,000	15,000
2021. 1. 22.	2021년 1월 드림스타트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지출	★★★★★★	2,376,000	50,000
2021. 1. 19.	2021년 1월 사무실 컬러복합기 임차료 지출	★★★★★★	2,376,000	50,000
2021. 3. 30.	여성친화도시 추진 홍보물 제작	□□□□□□	3,000,000	40,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5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 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25,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022. 12. 22.	2023년 악취실태조사 후보지 PPT 발표 자료 제작	○○○○○○	2,090,000	25,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2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30,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021. 3. 22.	속초항(청호동)내 방치폐선 처리	☆☆☆☆☆(주)	1,320,000	30,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3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45,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022. 7. 1.	2022년도 상반기 사무실 컬러복합기 임차료 지출	●●●	1,980,000	45,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4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총 2건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40,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계	2건	-	-	40,000
2022. 6. 28.	자동차 등록관리 세외수입 고지서 및 과태료부과 예고서 제작	△△△	1,980,000	25,000
2022. 5. 6.	2022년 정기검사 안내문 제작	○○○○	1,419,000	15,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4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5,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022. 3. 24.	시유지내 무단경작금지 안내판 제작	◆◆◆◆	1,100,000	15,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